

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5 년 9 월 4 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주식회사 머스트투자자문
(영문명) Must Investment Advisory
(홈페이지) <http://mustinvestment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도곡2동 467-14 삼성엔지니어링 12층
(전 화) 02-578-5080

대 표 이 사 : 김두용, 구은미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기획팀장
(성 명) 박상은 (전 화) 02-578-5080

작 성 자 : (직 책) 매니저
(성 명) 이지원 (전 화) 02-578-5080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 조제 3 항, 동법 시행령 제 36 조제 2 항제 1 호바목, 같은 항 제 2 호다목, 같은 항 제 3 호다목 및 같은 항 제 4 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-59 조에 의한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9 조제 1 항제 15 호에 의거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회사분할 결정

1. 분할방법		물적분할	
2. 분할목적		분할되는 회사인 머스트투자자문(가칭)이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사업부문을 분할함으로써 동 사업부문의 수익성을 제고하고, 회사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전문화 및 핵심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함.	
3. 분할비율		100%	
4.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		상법 제 530 조의 2 내지 제 530 조의 12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,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%을 보유하는 물적분할방식으로 함.	
5.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	회사명	머스트홀딩스(가칭)	
	자본금(원)	17.8 억	
	주요사업	분할설립회사에 이전되는 사업을 제외한 SPAC 투자 및 벤처캐피탈 투자업 등 제반사업	
	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	비상장사	
6. 분할설립회사	회사명	머스트투자자문(가칭)	
	자본금(원)	1 억	
	주요사업	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	
	재상장 여부	비상장사	
7. 감자에 관한 사항	감자비율(%)		-
	구주권제출기간	시작일	-
		종료일	-
	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	시작일	-
		종료일	-
8. 주주총회 예정일		2015-03-16	
9. 채권자 이의제출기간	시작일	2015-04-28	
	종료일	2015-06-09	
10. 분할기일		2015-08-13 (2015-09-04)	
11. 분할등기 예정일		2015-09-04	
12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2015-03-02	
-사외이사참석여부	참석(명)	-	
	불참(명)	-	
-감사(감사위원) 참석여부		-	
13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-	

* 분할의 관련된 사항은 금융당국의 승인사항입니다. 금융당국 승인으로 분할이 진행되었음을 보고합니다.